

미국의 성범죄자 등록·공개·고지법의 실효성에 관한 법제현안분석

김영진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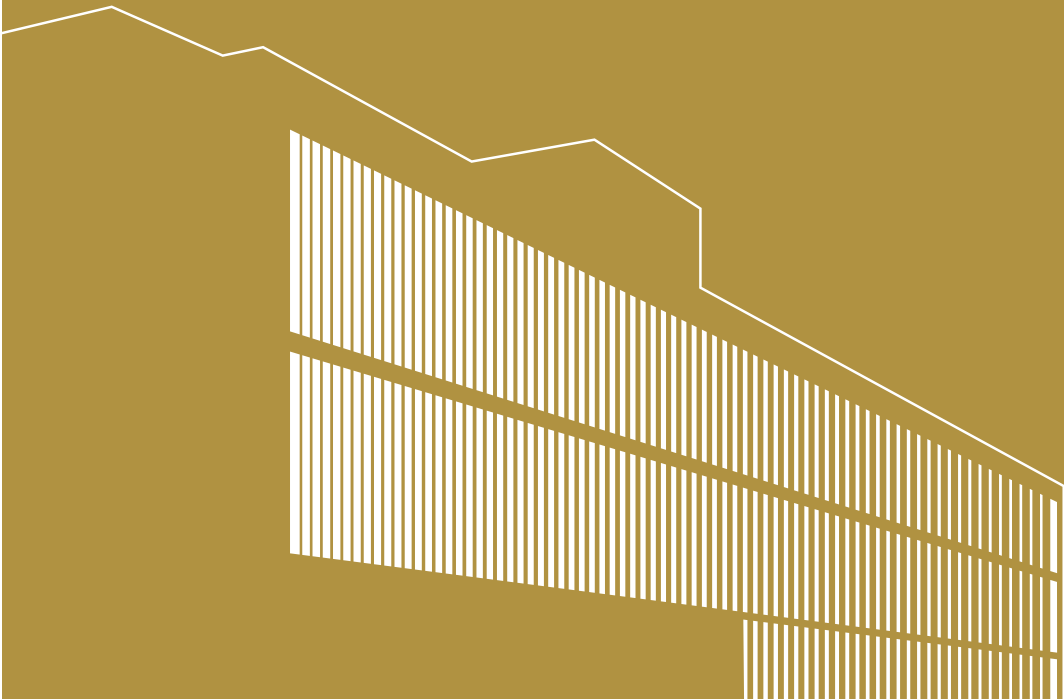
미국의 성범죄자 등록 · 공개 · 고지법의 실효성에 관한 법제현안분석

김 영 진(인천대학교 법학부 교수)

CONTENTS

법제현안분석지원
현안대응 Issue Paper

I. 미국의 성범죄자 등록·공개·고지법제 정립 추이	4
1. 연방법 제정 이전 각 주법의 현황	4
1) 등록법제 중심의 제정	4
2) 공개·고지법제 및 재범위험관리법제의 도입	5
2. 연방법 제정 이후의 법제 운용 현황	6
1) 연방(또는 전국) 차원 법제의 형성 및 정립	6
2) 연방법 제정 이후 주법의 동향	10
3) 새 연방법제의 정립: 아담 월시 성범죄자 등록 및 고지법의 제정	11
4) 최근의 입법 동향	12





II. 미국 성범죄자 등록·공개·고지제도의 운영 현황	14
1. 각 주별 제도 운영 현황	14
1) 성범죄자 등록 정보	14
2) 공개·고지 정보	21
3) 신상정보 등록 담당 기관	24
4) 기타 주별 제도 운영의 특징	25
2. 연방의 제도 운영 현황	26
1)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법(The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Act; SORNA)	26
2) 성범죄자 양형, 감독, 체포, 등록, 및 추적국 (Office of Sex Offender Sentencing, Monitoring, Apprehending, Registering, and Tracking; SMART)	31
III. 미국 성범죄자 등록·공개·고지제도에 대한 비판과 논란	32
1. 정책의 인지 및 실증적 효과 측면	32
2. 규범적 차원의 비판	33
1) 다른 법규범 원리와의 충돌문제	33
2) 아담 월시 법의 입법적 문제 및 그 운용에 대한 비판	34
IV. 결어	36
참고문헌	38

I /

미국의 성범죄자 등록·공개·고지법제 정립 추이

1. 연방법 제정 이전 각 주법의 현황

1) 등록법제 중심의 제정

- 미국의 성범죄자 신상등록·공개·고지제도의 초기 원형적 모습은 부도덕 행위(moral turpitude)를 포함하는 중범죄(felony)로 유죄 판결 받은 자의 등록을 요구하는 형식의 등록법제라 할 수 있음. 이를 최초로 채택한 곳은 1937년의 플로리다 주이며 대상 범죄의 범위를 성범죄로 국한시켜 등록법제를 최초로 채택한 곳은 1947년 캘리포니아 주로 볼 수 있음.¹⁾ 이 시기의 법제 운용은 단순한 신상등록에 불과하여 등록된 성범죄자가 일반에 공개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였음.
-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등록제도는 1950년대 및 1960년대에 애리조나, 플로리다, 네바다, 오하이오, 앨라배마에서 시행되기 시작하여 점차 확대되어 1980년대 말에는 12개의 주에서 시행, 점차 확대되어 1993년에는 21개주에서 시행되었음.
- 단순한 신상등록 방식으로 주법이 운용된 사례로 1986년 일리노이 주의 상습 아동성범죄자 등록법(The Habitual Child Sex Offender Registration Act)의 입법례를 들 수 있는데 이 법은 성범죄자로 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목적 하에 2회 이상 성범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거나 18세 미만의 아동을 성추행한 자의 신상정보를 10년 동안 주소지 관할 법집행기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였음.²⁾

1) Logan, W. A.,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Community Notification Policy: Past, Present, and Future, 34 New Eng. J. on Crim. & Civ. Confinement 3, p.5, 2008

2) 일리노이 주의 이 법은 시간이 흐르면서 범명과 규율 범위가 계속 변경되는데 1993년에는 아동 성범죄자 등록법(Child Sex Offender Registration Act)으로 개정되었고 1996년 1월에는 성범죄자 등록법(Sex Offender Registration Act)으로 개정되는 등 이후 지속적 변화를 겪게 됨.

2) 공개·고지법제 및 재범위험관리법제의 도입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에 공개제도 및 재범위험관리제도가 결합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련법이 최초로 시행된 곳은 1990년의 워싱턴 주로 Earl Shriner라는 범죄자가 소년을 성폭행·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치료를 규정한 종합적인 법률인 지역공동체 보호법(Community Protection Act)을 주법으로 제정하였음. 이 법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제도에 추가하여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도입한 바 공공기관이 성범죄자와 유괴범죄자의 정보 공개가 공공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고 이들의 위험성에도 대처할 수 있다고 결정한다면 공공에게 공개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³⁾ 또한 이 법은 일부 성범죄자들을 성폭력흉악범(sexually violent predators)으로 구분, 출소 후에 이들을 보호, 통제, 유지시킬 목적으로 특별감금치료센터(special commitment center)를 설치하고 이 곳에서 민사 구금 조치를 받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법원의 판단 하에 조건부 구금해제 조치도 가능하도록 함.⁴⁾
- 1992년 루이지애나 주의 경우는 성범죄 및 미성년자 상대의 성범죄로 유죄 판결 받은 자의 등록이 지역 법집행기관에 의해 강제되는 내용으로 주법을 입법하면서 보안관 사무실과 경찰 부처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이들의 지문과 관련정보를 주 경찰, 형사신원확인정보국, 공공안전교정국에 이월할 수 있도록 하였음.⁵⁾ 동시에 새로 이사 온 성범죄자는 공개된 자리에서 주민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리고 지역신문에 성명, 주소, 범죄 경력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고 함.⁶⁾

3) <http://app.leg.wa.gov/RCW/default.aspx?cite=4,24,550>

4) 한편 1994년 캔자스 주에서 제정한 성폭력흉악범법(Sexually Violent Predator Act)은 당시 아동성폭행으로 10년 형을 마치고 출소를 앞둔 악명 높은 상습 아동성폭행범 Leroy Hendricks가 사회에 나와 재범할 것을 우려한 주 정부가 정신질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성범죄의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 전과자에 대해 형기만료 후 재범가능성이 사라질 때까지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하였음.

5) <http://www.lsp.org/socpr/history.html>

6) 문재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위헌성 재검토, 헌법학연구 제9권 제2호, 2003, 351면 참조. 루이지애나 성범죄자 등록 법제(2013-2014)의 규정은 <http://all4consolaws.org/lawsbystates/states/rsol%20louisiana%20lexis%20reg%20geq%20140422.pdf> 참조. 한편 루이지애나의 메건법에 대해서는 Hilliard Trey Kelly, Louisiana's "Megan's Law": The Need for a Principled Approach, 58 La. L. Rev. (1998) 참조.

- 1994년에 뉴저지 주에서 7세 소녀 메건 캔커(Megan Kanka)가 성범죄 전과자에 의해 성폭행 후 살해 된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입법의 제정을 주장하여 뉴저지 주 메건법이 제정됨.⁷⁾ 뉴저지 주 메건법의 옹호자들은 법안이 다음 세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첫째, 반복되는 성범죄자들이 구금에서 풀려난 후 관청의 감독 부족 상황, 둘째, 공공에게 이들 성범죄자들의 행방에 대해 고지하려는 조직화된 노력의 부족, 셋째, 성범죄자들을 지속적으로 치료하도록 강제하는 교정시스템의 무능력 등이 거론되었음. 뉴저지 주 메건법의 제정 당시 주요 입법목적으로 첫째, 지역공동체에 풀려난 성범죄자들을 추적하는 법집행기관의 능력을 제고하는 것과 둘째, 위험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개인의 존재를 고지함으로써 지역공동체 및 특히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것을 들 수 있음.

2. 연방법 제정 이후의 법제 운용 현황

1) 연방(또는 전국) 차원 법제의 형성 및 정립⁸⁾

(1) 전국 아동보호법

- 성범죄 전과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를 통한 재범방지정책의 시초로 부를 수 있는 법은 전국 아동보호법(National Child Protection Act)이라 할 수 있는데 7살 소녀 메건 캔커의 살해 사건이 발생한 1994년의 1년 전인 1993년에 이미 연방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음. 이 법의 입법목적은 첫째, 아동보호기관들이 범죄자 신상조회에 관하여 접근 가능한 전국단위 시스템의 정립, 둘째, 주법 및 절차 규정이 준수해야 할 최소 기준의 정립, 셋째, 전국단위 신원조회 대상자에게 이의제기 및 신상정보 오류 수정관련 절차적 권리 부여, 넷째, 아동학대 범죄 정보에 대한 주 단위 보고 시스템 정립, 다섯째, 아동학대 및 관련범죄에 대한 통계 및 정보

7) Logan, W. A.,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Community Notification Policy: Past, Present, and Future, 34 New Eng. J. on Crim. & Civ. Confinement 3, p.5, 2008

8) <https://www.smart.gov/legislation.htm> 참조

데이터 제공을 통한 문서화 및 아동학대의 문제점 연구라 할 수 있음.⁹⁾ 또한 이 법은 아동학대 전과자들이 아동과 청소년 서비스 관련 직종에 채용되지 않도록 전국 전과기록조회 시스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었음.¹⁰⁾

(2) 웨터링법

- 주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에 관한 입법 시도들을 연방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독려하게 된 최초의 연방법제는 1994년의 웨터링법(Jacob Wetterling Crimes Against Children and Sexually Violent Offender Registration Act)으로 폭력범죄통제및 법집행법(Violent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 Act)의 일부로 제정되었음.¹¹⁾ 연방의회는 연방차원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등을 위한 통일적·종합적·권고적 기준을 정립한바 동법을 통해 성범죄자의 재범을 줄이고 수사기관의 수사력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의 안전도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음.
- 동법은 미성년자 상대 형사범죄자 및 성폭력범죄자가 지정된 주법집행기관에 현재 주소를 10년 동안 등록할 의무를 부과하였고 성폭력흉악범(sexually violent predators)의 경우는 평생 동안 등록하도록 하였음. 성폭력흉악범에 해당하는지 또는 더 이상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는 성범죄자 행동 및 처우에 관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주 위원회의 보고서를 수령한 후 선 고법원이 판단함.
- 웨터링법은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에 대한 등록·보관·관리·공개 등의 책임은 연방이 아닌 개별 주에 있음을 명확히 하면서 모든 주들은 늦어도 3년 이내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등에 관한 법제를 정립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주에 대해서는 연방 정부 제공 사법지원금 중 10% 해당 금액의 지급을 유예하는 조치를 취하였음. 그러나 이 웨터링법은 성범죄자의

9) National Child Protection Act of 1993, Sec.2. purposes

<https://www.govtrack.us/congress/bills/103/s1759/text> 참조

10) 유진, 아동학대와 위험한 타자의 범죄적 섹슈얼리티. 페미니즘연구, 제16권 제1호, 2016, 58면~59면 참조. 전국 아동보호법의 제정 배경에는 1983년 맥마틴 유치원사건으로 촉발된 일련의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들이 있었고 이에 대해 보육시설 및 보육교사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함. 같은 논문, 59~61면 참조.

11) 폭력범죄통제및 법집행법의 전체 내용은 <https://www.gpo.gov/fdsys/pkg/BILLS-103hr3355enr/pdf/BILLS-103hr3355enr.pdf> 참조. 웨터링법은 폭력범죄통제 및 법집행법의 TITLE XVII—CRIMES AGAINST CHILDREN, Subtitle A에 위치해 있음.

신상을 지역사회 등에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는 의무화하지 않았고 주정부의 재량에 따라 자발적으로 시행토록 하였던 한계가 있었음.

(3) 연방 메건법

- 뉴저지 주 메건법의 제정이후 주정부 차원을 넘어 연방에 통일된 성범죄자 등록·고지법인 연방 메건법이 제정되었고 이는 기존 웨터링법의 일부를 수정하는 형식을 따른 것으로 미국 법제의 특성상 웨터링법의 기본 내용은 그대로 승계되는 면이 강함. 다만 웨터링법이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해 주의 재량으로 맡겼던 바를 시정하여 주법에 의해 허용된 목적에 부합함을 전제로 각 주가 신상정보 공개절차를 필수적으로 시행할 것을 규정하였음.
- 또한 메건법에서 개정된 규정으로 정보 공개 및 정보의 공적 특성의 명료화에 관한 조항을 주목할 수 있는데 첫째, 주 등록프로그램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주법 하에 허용되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공개될 수 있고 둘째, 지정된 주의 법집행기관 및 주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지역 법집행 기관은 동법 하에서 신상 등록이 필요한 특정인과 관련하여 공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다만 범죄피해자의 신상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아야 함을 규정함.¹²⁾

(4) 팸 라이크너 성범죄자 추적 및 신원확인법

- 1996년 제정된 팸 라이크너 성범죄자 추적 및 신원확인법(Pam Lychner Sexual Offender Trafficking and Identification Act)은 연방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소재 및 이동을 추적하기 위해 FBI에 전국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며 각 주로 하여금 FBI가 보유하는 성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였음.¹³⁾ 또한 이 법에 의해 FBI는 최소한도 기준의 성범죄자 등록제를 시행하지 않는 주에 대해 성범죄자 주소를 등록하고 관리하도록 명하는 법적 근거를 보유하였음.¹⁴⁾

12) 연방메건법의 개정 내용은 <https://www.gpo.gov/fdsys/pkg/BILLS-104hr2137enr/pdf/BILLS-104hr2137enr.pdf> 참조

13) PUBLIC LAW 104-236—OCT. 3, 1996 110 STAT. 3093

14) Id. 110 STAT. 3095

- 동법에 의해 행방과 이동이 추적되는 성범죄자는 i)미성년자 상대 형사범으로 유죄 판결 받은 자, ii)성폭력범으로 유죄 판결 받은 자, iii)성폭력 흉악범에 해당하는 자임.¹⁵⁾
- 신상정보의 등록기간은 교도소에서 출소하거나 가석방인 자, 감독조건부 방면 중인 자, 보호 관찰 중에 있는 자는 10년의 기간 동안 등록해야 하고 2회 이상의 범죄경력 있거나 가중 성범죄를 범한 자 또는 성폭력 흉악범의 경우는 평생 동안 등록해야 함.¹⁶⁾

(5) 성적약탈자로부터 아동보호법

- 1998년 제정된 성적약탈자로부터 아동보호법(Protection of Children From Sexual Predators Act)은 아동 포르노그래피로부터의 보호, 성적 착취 예방, 음란물 전송 금지, 살인 및 유괴사건 조사, 아동상대 범죄자 및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 관련 규정 등을 담고 있었음.¹⁷⁾ 동법은 법무부내 정의지원국이 성범죄자 관리 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근거 규정을 두었는데 자격 있는 각 주는 이 프로그램의 시행에 드는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음.¹⁸⁾

(6) 인신매매 및 폭력 희생자 보호법

- 2000년 제정된 인신매매 및 폭력 희생자 보호법(Victims of Trafficking and Violence Protection Act)은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 및 여성폭력대처법, 기타 조항 등 3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이 중 여성폭력대처법의 내용에는 스토킹, 학교 및 캠퍼스 폭력, 데이트 폭력 등의 다양한 상황에서의 여성피해자에 대한 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법집행기관의 역량 강화 방안, 폭력피해자에게 법적 원조나 쉼터 서비스 및 핫라인 지원, 성폭력 예방 및 관련 교육, 구타당하는 이민자 여성의 보호에 관한 규정 등을 포함하였음.¹⁹⁾ 동법은 교육기관에 등록되어 있거나 고용되어 있는 성범죄자에 대해 고지 의무를 부과하면서-이 항목을 따로 캠퍼스

15) Id. 110 STAT. 3094

16) Id.

17) PUBLIC LAW 105-314—OCT. 30, 1998, 112 STAT. 2974

18) Id. 112 STAT. 2985

19) PUBLIC LAW 106-386—OCT. 28, 2000, 114 STAT. 1465

성범죄예방법(Campus Sex Crimes Prevention Act)으로도 칭함- 이들 성범죄자의 현 등록 또는 고용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도 주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알려야 함을 규정하였음.²⁰⁾

(7) 아동착취 종식을 위한 검찰구제 및 기타 제도법

- 2003년 제정된 아동착취 종식을 위한 검찰구제 및 기타 제도법(Prosecutorial Remedies and Other Tools to end the Exploitation of Children Today Act)은 아동학대 및 아동고문 살해범에 대한 일급살인 규정, 성적 학대에 대한 처벌의 상한 및 하한 규정, 유괴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섹스 투어리즘에 대한 처벌 규정, 상습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종신형 선고 규정 등을 포함하였음.²¹⁾ 또한 동법은 성범죄자 관련 정보에 대해 공공이 접근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의 관리를 규정하였고 나아가 법무부 형사국 아동범죄과로 하여금 모든 주의 인터넷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련 웹사이트를 연결시킬 수 있는 전국단위 인터넷 웹사이트를 창설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였음.²²⁾

2) 연방법 제정 이후 주법의 동향

(1) 규율 방식 및 대상의 확장: 일리노이 주 사례

- 일리노이 주에서는 1994년의 연방법 제정 이전인 1993년 제정되었던 아동 성범죄자 등록법(Child Sex Offender Registration Act)을 1996년 1월, 성범죄자 등록법(Sex Offender Registration Act)으로 확대, 개정하였는데 1996년 1월의 이 법은 성범죄 중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미수범인 자는 피해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성범죄자로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법시행일 기준 10년 전부터 이미 석방되었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자의 경우도 소급하여 등록하도록 규정하였음.
- 한편 1996년 6월, 일리노이 주는 기존 성범죄자 등록법(Sex Offender Registration Act)을 성범죄자등록, 어린이 성범죄자 및 어린이 살해자 지역사회 고지법(Sex Offender Registration

20) Id. 114 STAT. 1537

21) PUBLIC LAW 108-21—APR. 30, 2003, 117 STAT. 650

22) Id. 117 STAT. 688

Act and the Child Sex Offender and Child Murderer Community Notification Law)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단순 등록제에 고지제를 추가하여 확대 개편하였고 1997년 7월에는 성범죄자 등록, 성범죄자 및 어린이 살해자 지역사회 공지법(Sex Offender Registration Act and the Sex Offender and Child Murderer Community Notification Law)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규율대상을 성범죄자 전체로 확장시킴.

(2)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감독 강화: 플로리다 주 사례

- 2005년 플로리다 주는 당시 9세였던 제시카의 유괴 후 성폭행 사망 사건 이후 제시카 런스포드 법(Jessica Lunsford Act)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은 신상등록제도와 성폭력범죄자 감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음. 즉,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18세 이상의 자가 12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성폭행을 범하면 최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전자추적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며 학교나 보육시설 등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성폭력범죄자의 접근을 제한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지문을 채취하는 등 성범죄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시킴.

3) 새 연방법제의 정립: 아담 월시 성범죄자 등록 및 고지법의 제정

- 아담 월시 성범죄자 등록 및 고지법(Adam Walsh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Act)은 기존 선행 연방법인 웨털링법과 메건법의 통합 작업과 동시에 웨털링 법 시기부터 아웃라인이 그려졌던 연방 기준을 폐기함으로써 새롭고 포괄적인 성범죄자 감독 및 관리를 도모하였는데 이 법의 제1장이 성범죄자의 등록 및 고지에 관한 법(The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Act: SORNA)이었음.
- 이 법의 제정을 통해 각 주별,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온 신상정보 체계를 통일된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명문규정을 만들게 되었고 미국 연방 전역에 신상정보제도에 관한 최소 기준 권고안이 제시되었으며 의도적으로 신상정보 등록을 하지 않는 성범죄자에게는 연방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됨.
- 한편 아담 월시 법을 근거로 법무부 산하에 성범죄자 양형, 감독, 체포, 등록, 위치추적을 전담하는 부서(Office of Sex Offender Sentencing, Monitoring, Apprehending, Registering, and Tracking:

“SMART”)를 설립하여 지역 신상정보 업무 관련 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신상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수집, 입력, 관리, 유지, 전달 등 업무에 있어 다양한 법적, 기술적 자문을 제공.

- 미국 연방 법무부의 SMART 부서는 아담 월시 법 이후 설립된 부서의 활동을 결산하고 향후 미래 조직 발전 방향으로 성범죄자 관리·산정 및 계획 주도안(Sex Offender Management Assessment and Planning Initiative: SOMAPI)을 천명한 바 이 안의 골자는 그간의 신상정보제도 관련 업무 현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함과 동시에 이를 토대로 성범죄자 관리 플랫폼을 수립하여 연방 전체의 성범죄자 관리를 위한 총괄 업무를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4) 최근의 입법 동향

(1) 인신매매피해자 구제법

- 2015년 제정된 인신매매피해자 구제법(Justice for Victims of Trafficking Act)은 인신매매 피해자 피해자 펀드에 관련 규정, 아동 포르노그래피 피해자에 대한 직접 서비스 규정, 인신매매 조사 규정, 아동 흥약범에 대한 감시규정, 형사피해자의 권리 규정 등을 담고 있음. 이 중 TITLE V의 내용을 군대 성범죄자 보고 법(Military Sex Offender Reporting Act)이라 칭하며 국방부장관은 군대교정시설로부터 방면된 자 또는 군사법원에 의해 형이 선고되었으나 구금되지 않은 자의 신상정보에 대해 전국 성범죄자 명부 및 드루 소딘 전국 성범죄자 공공 웹사이트에 기술된 정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음.²³⁾

(2) 국제 메건법(International Megan’s Law to Prevent Child Exploitation Through Advanced Notification of Traveling Sex Offenders)

- 2016년 제정된 국제 메건법은 법 제정 후 90일 이내 국토안보부가 이민국 아동 착취 조사부처 내에 “Angel Watch Center”를 설치하여 동 센터로 하여금 미국 입국을 시도하는 성범죄자에 관련한 고지를 수령하도록 하고 즉각적으로 법무부를 포함하여 연방, 주, 지역기관들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함.²⁴⁾

23) PUBLIC LAW 114-22—MAY 29, 2015, 129 STAT. 258 (codified at 42 USC 16928a)

- Angel Watch Center는 해외로 나가고자 하는 여행자의 출국 48시간 전까지 전국 성범죄자 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연방보안국의 전국 성범죄자 감시 센터의 사례 관리 시스템 또는 해외여행에 대해 사전 신고한 개인 신상목록에 접근할 수 있는 다른 시스템 등을 점검함으로써 확인된 개인의 신상목록을 연방보안국 전국 성범죄자 감시 센터에 제공해야 함.²⁵⁾
- Angel Watch Center는 대상자가 해외여행에 관한 사전 신고를 제공함으로써 확인 절차를 이행하였다는 내용의 관련 정보를 여행 목적국에 전송할 수 있음.²⁶⁾
- Angel Watch Center는 오류로 인해 신고대상자가 되었다는 항변에 대해 심사할 수 있으며 어떤 절차에 따라 항변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공공에 공지해야 함.²⁷⁾

24) PUBLIC LAW 114-119—FEB. 8, 2016, 130 STAT. 15 (codified at 42 USC 16935b)

25) Id. 130 STAT. 18

26) Id.

27) Id. 130 STAT. 20

II

미국 성범죄자 등록·공개·고지제도의 운영 현황

- 미국의 경우 연방과 주가 분권화된 체제로 연방이 제시하는 신상정보제도의 최소 가이드라인은 모든 주가 준수해야 하나 각 주의 독자성·다양성을 인정함으로써 50개 주마다 비교적 다양한 내용의 성범죄자 등록·공개·고지제도를 연방의 최소 기준 범위 내에서 운용해 오고 있음.

1. 각 주별 제도 운영 현황

1) 성범죄자 등록 정보²⁸⁾

Alaska	성명, 주소, 직장소재지, 생년월일, 성범죄 또는 아동유괴 유죄 판결 판결 법원의 일시 및 장소, 성범죄자 또는 아동유괴자의 무조건적 무죄 방면 여부, 사용된 가명, 운전면허 번호, 사용 차량 확인 번호 및 외형 정보, 신원 확인 특성, 주소 변경 가능성 여부, 정신이상 치료 여부, 이메일(메시지) 주소, 인터넷 ID
Arizona	성명, 인터넷 ID, ID가 사용되는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인터넷 통신 서비스, 지문, 사진, 거소의 물리적 소재지 및 주소, 집주인 성명, 우편 사서함 주소, 임시거주지 주소, 운전면허증 번호, 차량 정보
Arkansas	성명, 사회보장번호, 나이, 인종, 성별, 생년월일, 신장, 체중, 눈동자 및 머리카락 색깔, 일시적 또는 장기적 주거 주소, 우편 사서함 주소, 직장 주소, 지문, 사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모든 전자기기, 이메일 주소 및 모든 인터넷 ID, 자동차 등록 번호 및 면허증 번호, 차량 특징
California	고용주 성명 및 주소, 지문 및 현재 사진, 소유 차량 번호, 인터넷 ID, 신상정보 등록 및 업데이트가 요구됨을 인지하고 있다는 서명이 있는 진술서, 타 주 이주 시 등록할 의무가 있다는 고지, 성명과 주소 정보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주 거소 증명서

28) 미국 각 주별 주의회 사이트에서 주 법령 검색을 통해 성범죄자(sex offender)의 등록(registration) 관련 조항 중 등록을 요하는 사항을 정리·열거하였음. 신상정보관련 기본 항목들에 대해 유사하게 등록을 요구하면서도 타 주와 차별화되는 법령상 표현들도 간간히 등장함.

Colorado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장 소재지, 가명 및 법률상 성명, 재학 중인 고등교육기관의 명칭, 주소, 위치, 지원 중인 고등교육기관의 명칭, 주소, 위치, 소유 또는 리스 차량 번호 및 색상 포함 외형 정보, 이메일(인스턴트 메시지, 채팅 방 등)주소, 인터넷 ID
Connecticut	성명, 범죄자 식별정보, 범죄이력, 정신병력 치료 기록, 주소, 이메일 및 메신저 주소, 인터넷 ID, 사진
Delaware	법률상 성명, 이전에 사용한 성명들, 가명 또는 별명, 사회보장번호, 이메일 주소 및 실제 주소, 인터넷 ID 및 연령, 성별, 인종, 외관, 기타 모든 종류의 신원 확인 정보, 범죄경력, 현재 거소와 예상되는 미래 거소, 학업 장소 및 업무 장소, 소유 또는 운행중인 모든 운송수단 및 그 주차(보관)지역 정보, 여권 사본 및 면허증, 집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방면, 가석방 또는 보호관찰 관련 조건문서, 피해자 연령, 피해자와 범죄자와의 관계, 범죄자 사진, DNA 샘플
Florida	성명,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인종, 성별, 신장, 체중, 머리카락 및 눈동자 색깔, 문신 또는 식별가능한 흉터, 이메일 및 인터넷 ID, 집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차량 식별번호 및 면허 태그 번호, 영구 또는 법적 거소 및 일시적 거소 주소, 원적지 주소 또는 우편사서함 주소, 여권, 직업 면허
Georgia	성명, 사회보장번호, 나이, 인종, 성별, 생년월일, 신장, 체중, 머리카락 및 눈동자 색깔, 지문, 사진, 주소, 원적지 주소, 우편 사서함, 이동차량이 거소일 경우 차량 식별번호, 이동식 주택이 거소일 경우 이동식 주택 위치 허가 번호, 이동식 주택 소유주의 성명 및 주소, 이동식 주택의 색상을 포함한 형상, 고용일자, 고용장소, 고용주 주소, 차량 정보 및 면허 태그 번호, 재학 중인 교육기관의 성명 및 주소, 등록되는 성범죄에 대한 설명 및 교도소 퇴소일 또는 보호관찰, 가석방, 감독조건부 방면이 된 날짜
Hawaii	성명, 모든 과거 성명들, 별명 또는 가명,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성별, 인종, 신장, 체중, 머리카락 및 눈동자 색깔, 실제 거주 주소 및 전화번호, 실제 거소지 체류시간, 거주 예정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인터넷 메시지 명칭, 인터넷 ID, 휴대전화번호, 직장 및 직장주소, 고정된 직장이 없는 경우 취업장의 형상, 직업 자격증, 재학 및 재학 예정 교육기관 성명 및 실제 주소, 차량 연식, 제조처, 모델, 색상 등 정보 및 면허 또는 등록번호, 여권 및 여권정보, 유죄 판결내용을 담은 문서, 하와이 가석방 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관할법원에 의해 명해진 조치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서
Idaho	성명(가명 또는 과거 성명 포함), 생년월일, 주소, 교육기관 주소지, 범죄자의 외관, 범죄자가 등록된 범죄자의 범죄 및 범죄 전력, 유죄판결이 행해진 장소, 현재 사진, 임시 거소 장소 및 체류 시기를 포함한 관련 정보
Illinois	성명, 사진, 거주지 주소, 직장, 전화번호, 고용주 전화번호, 재학 및 재학예정 교육기관 정보, 이메일 주소, 인터넷 ID, 인터넷 블로그, 판결내용, 차량 정보 및 등록 번호, 범행 당시 피해자 나이, 신체적 외관
Indiana	성명, 가명, 생년월일, 성별, 인종, 신장, 체중, 머리카락 및 눈동자 색깔, 흉터 또는 문신,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번호, 주 신분증 번호, 차량 형상, 차량 번호판, 차량 등록번호, 거주지 주소, 범죄 정황, 유죄 판결 날짜 및 장소, 판결내용, 사진, 이메일 주소, 인터넷 ID(인스턴트 메시지 대화명, 채팅 룸 유저명, SNS 유저명)

Iowa	범죄 전력(영장 발부, 가석방, 보호관찰, 감독조건부 방면 여부, 체포일, 유죄판결일), 생년월일, 여권 및 입국 서류,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DNA 샘플, 재학 및 재학예정 교육기관의 명칭 및 주소, 고용주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 고용 정보, 지문, 인터넷 ID, 성명, 별명, 가명, 소수민족 또는 부족 내의 이름, 손바닥 프린트(장문), 사진, 신체적 외관(흉터, 문신 포함), 전문자격증 정보, 거주지, 사회보장번호, 전화번호, 임시거소 정보, 등록을 요하는 범죄행위의 법령상 근거 및 문언, 차량 정보, 차량 번호판, 동일 거소 거주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Kansas	성명, 가명, 생년월일, 출생지, 범죄의 법적 근거, 유죄판결 일시 및 장소, 판결케이스 번호, 피해자의 성별 및 피해 당시 연령, 현재 거주지 주소, 거주 예정지 주소, 임시거소 정보,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사회보장번호, 인종, 소수민족, 피부 톤, 성별, 연령, 나이, 신장, 체중, 머리카락 및 눈동자 색깔, 흉터, 문신, 혈액형 등 모든 신체적 외관,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모든 차량정보 및 차량번호, 직업 및 고용주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고용 장소,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차량 정보, 차량 번호판, 차량 등록정보, 전문 자격증 정보, 정신 치료 이력, 사진, 지문, 손바닥 프린트(장문), 재학 또는 근무할 교육기관의 주소 및 전화번호, 이 메일 주소, 인터넷 Id, 여행 및 입국관련 서류, 보호관찰, 가석방 또는 지역사회교정센터 담당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DNA 샘플
Kentucky	성명(개명 이전 성명 포함), 사회보장번호, 연령, 인종, 성별, 생년월일, 신장, 체중, 머리카락 및 눈동자 색깔, 지문, 손바닥 프린트(장문), DNA 샘플, 사진, 사용된 가명, 거주지 주소, 자동차 운전면허 및 정부발행 신분증 번호, 범죄에 대한 간단한 설명, 행정 규칙에 의해 정부가 결정하는, 등록자의 신상확인에 유용할 수 있는 기타 정보
Louisiana	성명, 가명, 물리적 주소 또는 거주지 주소, 고용 장소 명칭 및 물리적 주소, 학생년월일 경우 학교 명칭과 주소, 두 가지 종류의 실제 거주 증명서(전화요금 청구서, 공과금 청구서), 범죄 이력, 유죄 판결 장소, 사건번호 및 사건 적용법령 내용, 현재 사진, 지문, 손바닥 프린트(장문), DNA 샘플, 전화번호(집 전화 및 휴대폰), 소유 또는 운행하는 모든 차량 정보, 자동차 등록증, 운전면허증, 사회보장번호 및 생년월일, 성범죄자의 외모 특성(성별, 인종, 머리카락 및 눈동자 색깔, 신장, 연령, 체중, 흉터 또는 문신 등 식별할 수 있는 몸의 특성), 모든 이메일 주소 및 온라인 사용 명칭, 인터넷 ID, 7일 이상 체류 시의 임시 거소 정보, 체류일수에 상관없이 국제 여행시의 임시 거소 정보, 여행 및 입국 관련 서류
Maryland	성명, 거주지 주소, 고용주 성명 및 주소, 직장 주소, 재학 중인 교육기관 명칭, 유죄 판결내용 및 판결장소, 가명, 별명, 인터넷 ID, 대화명, 이메일주소, 사회보장번호, 생년월일, 입국서류 또는 여권복사본, 자동차 등록 번호, 자동차 주차 장소, 전화번호, 운전면허증, 손바닥 프린트(장문) 및 지문, 성범죄이력
Massachusetts	성명, 가명, 생년월일, 성별, 인종, 신장, 체중, 눈동자 및 머리카락 색깔, 사회보장번호, 집 주소, 직장 주소, 재학 중일 경우 교육기관 명칭, 유죄판결이 있는 경우 범죄행위의 내용, 재범위험성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기타 다른 정보, 범죄자 신원확인에 유용한 기타 다른 정보

Maine	성명, 가명, 생년월일, 성별, 인종, 신장, 체중, 눈동자 색깔, 우편 주소 및 거주지 주소 (물리적 위치), 고용 장소 및 재학중인 학교의 주소 및 위치, 범죄 이력, 정신 이상 등에 대한 조치 표기, 사진 및 지문, 유죄판결에서 기술된 범죄 내용, 판결 일자, 당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정보
Michigan	법률상 성명 및 가명, 별명, 소수민족 또는 부족 내의 이름, 사회보장번호, 생년월일, 거주지 주소, 임시적 체류장소의 이름 및 주소, 고용주의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인스턴트 메신저 주소, 차량 번호판, 차량 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 개인 신분증 번호, 여권 및 입국서류의 디지털 카피, 전문 자격 정보, 유죄판결 내용 요지, 신체적 특징, 사진, 지문, 손바닥 프린트(장문)
Minnesota	주위적 거주지 주소, 예비적 거주지 주소, 소유 또는 임대한 미네소타네 모든 재산의 주소, 고용된 모든 직장 주소, 재학 중일 경우 학교 주소, 차량 연식, 제조처, 모델, 번호판, 차량 색상 등의 정보
Mississippi	성명(개명 이전 성명 포함)현행 영속적 거주 및 임시 거주지 주소, 임시거주지, 고용일, 고용 장소 및 주소(자원봉사 및 무급근로 포함), 유죄 판결받은 범죄 내용, 유죄판결 장소, 가명, 별명, 소수민족 또는 부족 내의 이름, 사회보장 번호, 생년월일, 연령, 인종, 성별, 신장, 체중, 눈동자 및 머리카락 색깔, 신체적 특징, 범죄행위의 간단한 기술, 운전면허 번호, 신원확인카드 번호, 향후 거주예상지, 차량 등록 번호, 자동차 면허 태그 번호, 차량 정보, 범죄이력, 사진, 지문 및 손바닥 프린트(장문), 정신 치료 기록, 생물학적 DNA샘플, 재학 또는 근로중인 학교나 교육기관의 명칭, 등록이 필요한 성범죄에 대한 유죄판결 카피, 인터넷 ID, 대화명, 전문자격증 정보, 여권 및 입국서류상 정보, 전화번호(거주지, 임시거소, 휴대폰, 직장 전화)
Missouri	성명, 주소, 사회보장번호, 전화번호, 자동차 번호판 번호, 차량 정보, 인터넷 ID, 직장 정보, 재학중 학교 정보, 유죄판결 날짜 및 판결 장소, 범죄 내용, 피해자의 성별 및 나이, 미주리 주 성범죄자 프로그램의 참여여부, 지문, 손바닥 프린트(장문), 사진, DNA 샘플
Montana	성명, 가명, 사회보장번호, 거주지 정보, 재직 또는 재직예정 직장의 명칭 및 주소, 재학 및 재학예정 학교 명칭 및 주소, 운전면허 번호, 차량 면허 번호 및 차량 정보, 이메일 및 SNS 유저명
Nevada	성명, 가명, 사회보장번호, 범죄자의 거소 또는 위치상 주소, 범죄자가 재직 중이거나 재직 예정 중인 직장의 명칭 및 주소, 재학 중이거나 재학 예정 중인 교육기관의 명칭 및 주소, 차량 면허 번호 및 차량 정보 연방법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정보
New Hampshire	성명, 가명, 영구거주지 주소, 임시거주지 주소, 직장 또는 재학 중인 교육기관의 명칭 및 주소, 전문 자격증, 차량 번호판, 차량 등록 번호, 차량 정보,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신체적 식별 특징(흉터 및 문신 포함), 전화번호(휴대폰 포함), 여권 및 입국서류, 집주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사진, DNA 샘플, 지문 및 손바닥 프린트(장문), 유효한 운전면허증 및 신원확인카드 포토 카피

<p>New Jersey</p>	<p>유죄판결 일자 및 장소, 신고 번호, 지문, 범죄 행위에 대한 간략한 기술, 범죄 전력이나 교정 기록 등 미래 범행 위험을 예측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 이름 및 사회보장번호, 생년월일, 가명, 별명, 소수민족 또는 부족 내의 이름, 거주지 주소 또는 거주 예정지 주소, 임시 거주지 주소, 고용 장소의 이름, 주소, 날짜, 재학중이거나 재학예정 중인 교육기관의 명칭 및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인스턴트 메시지 주소, 인터넷 ID, 차량 번호판, 차량 색상, 제조처, 모델, 인종, 성별, 생년월일, 신장, 체중, 머리카락 및 눈동자 색깔을 포함한 신체적 외형, 현재 사진, 지문, 손바닥 프린트(장문), DNA샘플, 주 발급 운전자 면허의 복사본 또는 디지털 카피, 여권 또는 입국문서의 복사본 또는 디지털 카피, 직업적 면허 정보</p>
<p>New Mexico</p>	<p>법적 성명, 가명,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현재 주소, 직장, 유죄판결 받은 성범죄, 판결 날짜 및 장소, 사진, 지문, 문신과 흉터를 포함한 신체적 특징, DNA샘플</p>
<p>New York</p>	<p>성명, 가명, 생년월일, 성별, 인종, 신장, 체중, 눈동자 색깔, 운전면허 번호, 거주지 및 거주예정지 주소, 인터넷 계정, 사진 및 지문, 유죄판결 받은 범죄행위 태양, 판결일자, 판결내용, 기등록되어 있거나 등록예정인 교육기관, 레벨 II, III의 경우 고용된 직장 또는 고용 예정 직장의 주소, 기타 등록관서에 의해 관련된다고 여겨지는 모든 다른 정보</p>
<p>North Carolina</p>	<p>성명, 가명, 생년월일, 성별, 인종, 신장, 체중, 눈동자 및 머리카락 색깔, 운전면허번호, 거주지 주소, 유죄판결 받은 범죄행위 태양, 등록 당시 촬영된 사진, 지문, 범죄자가 학생이거나 신상정보 등록 1년 이내 학생으로 등록 예정여부를 가리키는 진술서, 교육기관에 고용되었거나 신상정보 등록 1년 이내 고용 예정여부를 가리키는 진술서, 사용 또는 사용을 의도한 인터넷 ID</p>
<p>North Dakota</p>	<p>성명, 가명, 별명, 신체적 외관(흉터나 문신포함),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범죄이력, 판결내용, 판결장소, 거주지 주소, 재학 또는 근무 중인 교육기관, 차량 번호 및 차량 외관 상세,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직장명칭 및 직장주소, 전문 자격증, 여권정보 및 입국서류 정보, 지문, 손바닥 프린트(장문), 신분증사진</p>
<p>Oklahoma</p>	<p>성명, 사용 중인 또는 알려진 가명, 신체적 외관, 사진, 지문, DNA샘플, 판결내용, 판결장소, 위반 범죄행위 태양, 범행 장소, 병원 또는 형부집행기관의 명칭 및 주소, 과거 및 현재 거주지주소(지도상 주소 및 우편번호 포함, 물리적 주소만 가능하고 사서함은 불가), 거주 예정 기간, 등록 및 등록 예정 학교의 명칭 및 주소,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와 같이 거주하는 사람의 성별, 성명, 생년월일, 성별, 관계, 동거기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위험분류레벨, 이메일 주소, 인스턴트 메시지, 채팅 또는 기타 인터넷 접속이나 소셜 네트워킹 목적으로 사용되는 인터넷 Id</p>

Oregon	성명, 주소, 생년월일, 신체적 외관, 사진, 거주지 명칭 및 우편번호, 교정담당 직원 성명과 연락처, 등록 및 등록예정 중인 학교 명칭 및 주소, 판결내용, 범죄내용
Pennsylvania	성명, 가명, 별명, 필명, 소수민족 또는 부족 내의 이름, 인터넷 통신 또는 게시물 자기 확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명칭, 전화번호(휴대폰 포함), 연방정부가 발급한 유효한 사회보장번호, 거주지 주소, 임시거주지 주소, 여권 및 입국 증빙 서류 복사본, 직장 명칭 및 주소, 직업 관련 및 전문 자격증 정보, 등록중인 학교 명칭 및 주소, 차량 정보, 번호판, 차량 등록번호, 실제 또는 주장되는 생년월일
Rhode Island	성명, 신원 식별 가능 요인, 거주 예정지,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범죄 이력, 정신치료 이력, 등록, 고용 또는 직업 획득 교육기관 명칭 또는 주소, 등록 예정, 고용 예정 또는 직업 획득 예정 중인 교육기관 명칭 또는 주소
South Carolina	성명, 사회보장번호, 연령, 인종, 성별, 생년월일, 신장, 체중, 머리카락 및 눈동자 색깔, 영구 거주지주소, 현재 임시 거주지 주소(원적지 주소 및 사서함 포함), 고용장소 및 고용날짜, 차량 제조처, 모델, 색상 및 면허 태그 넘버, 지문 및 사진, 등록되었거나 고용된 교육기관의 명칭 및 주소(특정 캠퍼스 위치 포함), 차량 확인 번호, 차량 등록 번호, 주거용 보트의 확인 번호, 제조자 시리얼 번호, 선명, 등록번호 및 색상 정보
South Dakota	성명, 생년월일, 가명, 신체적 외관, 사진, 지문, 손바닥 프린트(장문), 거주지주소, 거주지 체제 시간, 범죄유형, 유죄 판결일자, 별개의 비공개 양식상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 또는 신원확인카드 번호 및 복사본, 성범죄자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 고용주 성명, 주소, 전화번호, 학교 명칭, 주소, 전화번호, 고용기간 또는 학교 재학기간, 직업, 소유 또는 정기적 운행 중인 차량 번호판, 사용자 이름, 인터넷 상 가명을 포함하여 인터넷 계정에 대해 확인 가능한 정보, 중범죄자 목록, 범죄 행위 태양, 현재 보호관찰대상자이거나 피감독자임에 대한 승인, 지역공동체 안전지구진입제한에 대한 승인, 성범죄자와 정기적 교류를 갖는 지역 내 2인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여권 및 입국정보를 증명하는 문서, 전문적, 직업적, 상업적 자격증
Tennessee	성명, 가명, 결혼 사유로 갖게 된 이름, 생년월일, 탄생 장소, 사회보장번호, 유효한 운전면허증 사본, 감독조건부 방면된 경우 보호관찰관 또는 가석방 관리관등 감독책임자의 성명, 주소, 전화 번호, 유죄판결 받은 범죄 행위 태양, 범행날짜, 현재 고용주 성명, 주소, 전화번호, 고용기간, 현재 거주지의 물리적 주소 및 거주 기간(사서함 번호는 주소에서 배제), 우편 주소, 사용되거나 소유 중인 차량 정보, 주거용 보트의 선명, 외관, 인식번호, 고용되거나 직업을 수행하거나 학생으로 등록 중인 교육기관 명칭 및 주소, 인종, 성별, 지역에 사는 가장 가까운 친척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범죄 피해자의 미성년 여부, 피해자의 수 및 정확한 연령, DNA 샘플, 사용자 이름, 소셜 미디어 계정, 인스턴트 메시지, 기타 인터넷 통신 플랫폼을 포함한 이메일 주소 정보, 미성년자가 주요 또는 이차적 거주지에 살고 있는지 여부

Texas	<p>성명, 생년월일, 성별, 인종, 신장, 체중, 눈동자 및 머리카락 색깔, 사회보장번호, 운전 면허번호, 신발 크기, 거주지 또는 거주 희망지 주소, 물리적 주소에 살지 않을 경우 살거나 살고자 하는 지리적 위치의 상세한 설명, 가명, 집 전화 번호,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최근 컬러 사진, 유죄판결 받은 범죄행위 태양, 피해자의 연령, 판결일자, 당사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가석방, 보호관찰 조건부 방면, 지역감독 또는 의무감독 등이 처했는지에 대한 설명, 자격증 정보, 고용 또는 고용 예정이거나 특정 공립 사립 교육기관에 속한 학생인지에 대한 설명 및 그 기관의 명칭 및 주소, 온라인 ID, 차량 제조처, 모델, 등록번호, 색상 및 번호판을 포함한 차량 등록 정보, 기타 관계기관이 요구하는 정보</p>
Utah	<p>성명, 알려진 가명, 주요 또는 이차적 거주지 주소, 신체적 외관, 생년월일, 신장, 체중, 눈동자 및 머리카락 색깔, 소유하거나 정기적으로 사용중인 차량 제조처, 모델, 색상, 연식, 번호판, 차량 등록 번호, 현재 사진, 지문, DNA 샘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인터넷 ID, 온라인 ID를 사용함으로써 등록된 모든 웹사이트의 이름 및 인터넷 주소, 여권 카피 및 외국인일 경우 입국 상태를 증빙하는 서류, 전문 자격증, 고용되거나 등록 중인 교육기관, 고용된 장소의 명칭, 전화번호 및 주소, 자원봉사자로 일하는 장소의 명칭, 전화번호 및 주소, 사회보장번호</p>
Vermont	<p>성명, 생년월일, 현재 주소, 사회보장번호, 현재 직장, 등록중인 교육기관의 명칭 및 주소, 신체적 외관, 사진, 거주 지역, 유죄 판결일자 및 판결 내용, 전화번호, 프로그램 수행여부, 고위험군 분류 여부, 지문</p>
Virginia	<p>거주지 주소, 이메일 인스턴트 메시지, 채팅 또는 다른 인터넷 통신명, 인터넷 ID, 지문, 손바닥 프린트(장문), 고용 장소, 차량 등록 정보, 성명, 사진, 생년월일, DNA 정보, 직장 정보, ID카드 복사본, 성별, 가명</p>
Washington	<p>성명, 가명, 온전하고 정확한 거주지 주소, 생년월일, 고용 장소, 직장주소, 유죄판결 상의 범죄내용, 유죄판결 장소 및 유죄판결 날짜, 사회보장번호, 지문, 사진</p>
West Virginia	<p>가명 및 별명을 포함한 성명, 등록시 거주하거나 거주를 희망하는 주소, 등록자가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소유 또는 리스된 부동산 주소, 사회보장번호, 사진, 범죄 내용 및 유죄 판결내용, 지문 및 손바닥 프린트(장문), 사진, 차량 제조처, 모델, 색상 및 번호판을 포함하여 소유 또는 정기적으로 운행되는 차량 정보, 인터넷 ID 및 계정 정보, 거주지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p>
Wisconsin	<p>성명, 가명, 생년월일, 성별, 인종, 신장, 체중, 머리카락 및 눈동자 색깔 등 신원 확인에 충분한 정보, 위반 법령, 유죄판결 날짜 및 장소, 보호관찰 및 감독조건부 방면이 된 날짜, 거주지 또는 거주예정지 주소, 감독기관 명칭, 이메일 주소, 인터넷 ID, 직장주소 및 명칭, 재학 또는 재학예정 중인 교육기관 명칭 및 위치, 등록부 내 정보가 갱신된 가장 최근 날짜</p>
Wyoming	<p>성명, 가명, 거주지주소, 생년월일, 출생지, 사회보장번호, 직장 위치 및 주소, 유죄판결 날짜, 유죄판결 범죄, 재학 또는 재학예정중인 교육기관, 차량 번호판 및 소유 또는 운행 중인 차량 외관, DNA 샘플, 피해자 연령, 인터넷 ID,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p>

2) 공개·고지 정보²⁹⁾

Alabama	성명(가명, 별명, 소수민족 또는 부족 내의 이름), 생년월일, 모든 거주지 주소, 실제 재학 중이거나 재학 예정인 학교의 주소, 일하거나 일할 예정인 곳의 주소, 차량 번호판, 신체적 외관, 최근 사진, 범죄 이력, 유죄판결받은 성범죄에 적용되는 형사 조항의 문언, 범죄자의 상태
Alaska	성명, 주소, 직장주소, 생년월일, 판결장소 내용, 가명, 운전면허 번호, 차량 번호 및 차량 정보, 주소 변경 가능성여부, 정신이상 치료 여부, 이메일주소, 인터넷 ID
Arizona	범죄자 식별정보, 성범죄자 지정유형, 석방날짜
Arkansas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 번호, 이메일주소, 인터넷 사용자 성명, 피해자의 정보를 제외한 성범죄자 등록정보
California	성명, 생년월일, 성별, 인종, 신체적 외관, 사진
Colorado	성명, 주소, 신체적 외관(성별, 신장, 체중 등), 디지털 사진 또는 이미지
Connecticut	인터넷 ID, 이메일주소를 제외한 성범죄자 주소
Delaware	가장 최근 확인된 주소, 유죄판결을 받은 특정 성범죄 또는 범죄행위의 태양, 판결일자
Florida	성명,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인종, 성별, 신장, 체중, 머리카락 및 눈동자 색깔, 문신 또는 식별가능한 흉터, 이메일 및 인터넷 ID, 집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차량 식별 번호 및 면허 태그 번호, 영구 또는 법적 거소 및 일시적 거소 주소, 원적지 주소 또는 우편사서함 주소, 여권, 직업 면허
Georgia	성명 및 주소, 체포일자, 체포시간 및 장소, 나이, 인종, 성별, 생년월일, 신장, 체중, 머리카락 색깔, 눈동자 색깔, 사진, 차량 정보, 재학중인 학교 명칭 및 주소, 범죄행위 태양, 위험도 분류정보
Hawaii	성명, 과거 이름, 별명 또는 가명, 생년월일, 신체적 외관, 범죄자가 10일 이상 머문 장소의 실제 주소, 거주를 예정지의 실제 주소, 현재 고용된 곳의 시가지 이름 및 우편번호, 전문 자격증, 재직 또는 재학 중인 교육기관의 명칭 및 실제 주소, 소유하거나 운행중인 차량 연식, 제조처, 모델, 색상, 면허 번호, 유죄 판결 내용 및 적용 법조항, 최근 사진
Idaho	성명, 가명, 신체적 외관(흉터나 문신 포함), 생년월일, 거주지 주소 및 외관 묘사, 재학 또는 근무 중인 학교, 범죄행위태양, 사진

29) 미국 각 주별 주 의회 사이트에서 주 법령 검색을 통해 성범죄자(sex offender)의 고지(notification) 관련 조항 중 고지되는 정보 위주로 정리·열거하였음.

Illinois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인터넷 ID, 인터넷 대화명, 운영 블로그 및 웹사이트, 범죄내용, 판결내용, 성범죄자 분류 내용, 사진, 직장
Indiana	성명, 가명, 생년월일, 성별, 인종, 신장, 체중, 머리카락 및 눈동자 색깔, 흉터 및 문신, 차량 정보, 차량 등록번호, 거주지 주소, 범죄행위태양, 판결 일자, 판결장소, 판결내용, 사진
Iowa	생년월일, 성명, 별명, 가명, 소수민족 또는 부족내의 이름, 사진, 신체적 외관(흉터, 문신 포함), 거주지, 적용법조 및 법령상 근거
Kansas	성명, 가명, 거주지 주소, 임시 거주 정보, 재학 또는 재학 예정중인 학교 주소, 소유하거나 운행중인 차량 정보 및 차량 번호판, 신체적 외관, 범죄행위 태양, 현재 사진, 전문 자격증
Kentucky	성명, 주소, 자동차 면허 번호, 정부 발급 신원 확인 카드 번호
Louisiana	유죄판결 받은 범죄행위 태양, 성명, 주소, 신체적 외관, 사진 또는 사진 복사본
Maryland	범죄피해자 정보,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정보, 치료기록, 입국서류번호, 범죄이력을 제외한 성범죄자의 성명 및 식별가능한 개인 정보
Massachusetts	성명, 거주지 주소 및 이차 거주지 주소, 직장 주소, 범죄내용, 연령, 인종, 신장, 체중, 눈동자 및 머리카락 색깔, 사진, 성폭력 흉악범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 신상등록 의무 이행 여부
Maine	성명, 가명, 생년월일, 인종, 신장, 체중, 눈동자 색깔, 우편 주소, 사진, 거주지 주소, 직장 주소, 재학 또는 재학 예정 학교 주소, 범죄행위 태양 및 적용 법조, 판결일자
Michigan	성명, 가명, 별명, 소수민족 또는 부족 내의 이름, 사회보장번호, 생년월일, 거주지 주소, 임시 거주지 명칭 및 주소, 직장주소, 근무 또는 재학 중인 학교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및 인스턴트 메시지, 로그인 이름, 운전면허 번호, 여권 및 입국 서류 디지털 카피, 직업적 전문 자격증, 유죄판결 내용의 요약, 신체적 외관, 사진, 지문, 손바닥 프린트(장문), 범죄 행위 적용 법조, 채포 영장 정보, 성범죄자 분류 정보 및 등록 상태, DNA 샘플, 범죄이력 기록
Minnesota	주위적 거주지 주소, 예비적 거주지 주소, 소유 또는 임대한 미네소타내 모든 재산의 주소, 고용된 모든 직장 주소, 재학 중일 경우 학교 주소, 차량 연식, 제조처, 모델, 번호판, 차량 색상 등의 정보
Mississippi	피해자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정보, 치료기록, 입국서류 번호, 범죄이력을 제외한 성범죄자의 성명과 식별가능한 개인 정보
Missouri	성명, 가명, 생년월일, 신체적 외관, 거주지 주소, 직장 주소, 학교주소, 사진, 차량 정보 및 번호판, 인터넷 ID
Montana	성명, 범죄행위 태양, 주소, 사진, 신체적 외관, 생년월일, 주소, 범죄피해자유형, 차량 정보 및 번호판, 판결 내용, 판결 일자, 범행 발생 장소

Nevada	성명, 가명, 신체적 외관, 거주지 주소, 범행을 범한 지리적 위치, 피해자의 연령, 성별, 인종, 일반적 외관, 직장 주소, 재학 학교 주소, 사진, 생년월일, 자동차 번호판, 판결 내용, 판결 장소
New Hampshire	성명, 가명, 연령, 인종, 성별, 생년월일, 신장, 체중, 머리카락 및 눈동자 색깔, 신체적 외관, 영구적 거주지 주소, 임시적 거주지 주소, 범죄행위 태양, 판결 일자, 범죄 이력, 사진, 재학 중인 학교의 주소, 피해자 정보
New Jersey	성명, 가명, 범죄행위 태양, 피해자의 성별 및 13세 또는 18세 이하 해당 여부, 범죄자 분류 등급, 연령, 인종, 성별, 생년월일, 신장, 체중, 머리카락 및 눈동자 색깔, 우편 번호, 거리주소
New Mexico	성명, 가명, 현재 주소, 관행적으로 살던 장소의 주소, 고용 장소, 범죄 행위 태양, 사진, 생년월일, 신체적 외관(흉터, 문신 포함)
New York	성명, 가명, 사진, 신체적 외관, 정확한 거주지 주소, 판결내용, 범죄이력, 피해자의 유형, 범죄자가 속한 학교나 기관 명칭
North Carolina	성명, 성별, 주소, 신체적 외관, 사진, 판결 일자, 범죄행위 태양, 판결의 결과 선고된 형량, 등록 상태
North Dakota	성명, 주소, 범죄행위 태양, 판결 일자, 판결 장소, 판결 내용
Oklahoma	성명, 물리적 거주지 주소, 신체적 외관, 연령, 신장, 체중, 눈동자 및 머리카락 색깔, 차량 정보, 보호관찰, 가석방 또는 조건부 방면시 조건 또는 제한, 범죄자의 주요 또는 이차적 목표물에 대한 설명, 범죄 방식에 대한 설명, 현재 사진, 보호관찰 또는 가석방 담당관 성명 및 전화번호, 범죄자 분류 등급
Oregon	성명, 거주지 주소, 신체적 외관, 차량 정보, 판결내용, 범죄내용, 범죄 피해자 외관, 사진, 보호관찰 또는 가석방 담당관 성명 및 전화번호
Pennsylvania	성명, 가명, 별명, 필명, 소수민족 또는 부족내 이름, 신체적 외관(문신, 흉터 포함), 범죄행위 태양, 범죄이력, 판결 날짜, 판결 내용, 사진, 거주지주소, 직장주소, 차량 정보 및 번호판
Rhode Island	성명, 식별 가능 정보, 거주지 주소, 거주예정지 주소, 범죄 이력, 재학 또는 재학 예정 중 학교 주소, 사진
South Carolina	성명, 주소, 신체적 외관, 차량종류, 판결내용, 범죄내용, 범죄 대상묘사, 사진, 직장주소 및 학교주소
South Dakota	성명, 신체적 외관, 사진, 주소, 범죄행위 태양, 판결내용, 출입제한지역 관련 정보
Tennessee	성명, 가명, 생년월일, 범죄행위 태양, 주위적 주소 및 예비적 주소, 신체적 외관, 인종, 성별, 최근 사진, 운전면허 번호, 가석방 또는 보호관찰 담당관, 고용 또는 재학 중인 학교 주소, 적용 법조, 범죄 이력, 고용주 주소, 차량정보 및 번호판, 아동에 대한 범죄행위자인지 여부

Texas	사회보장 번호, 운전면허번호, 전화번호를 제외한 등록 정보 일체
Utah	성명, 가명, 주위적, 예비적, 임시 거주지 주소, 신체적 외관, 생년월일, 신장, 체중, 눈동자 및 머리카락 색깔, 차량 제조처, 모델, 색상, 연식 및 차량 번호판, 현재 사진, 전문 자격증, 고용되거나 재학중인 학교육기관, 자원봉사자로 일하는 장소의 목록
Vermont	성명, 일반적 신체적 외관, 사진, 범죄행위 태양, 형량, 성범죄자의 사진 및 지문을 포함하여 등록부가 추가정보를 갖고 있다는 사실, 현재의 고용상태, 학생으로 등록된 성범죄자가 재학 중인 교육기관의 명칭 및 주소, 교정당국이 제공하는 처우를 받았는지 여부
Virginia	성명, 가명, 판결장소와 판결일자, 범죄행위 태양, 연령, 현재 주소 및 사진, 주 경찰이 공공을 만족시키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Washington	성명, 관련 판결내용, 100블럭 단위 주소, 신체적 외관, 사진
West Virginia	성명, 주소, 신체적 외관, 차량 정보 및 번호판, 판결내용, 범죄내용, 사진, 직장 주소 및 학교주소, 피해자와 관련된 정보를 제외한 내용
Wisconsin	사진, 신체적 외관, 성별, 인종, 성명, 거주지 주소, 사법 기관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 여부, 등록일자
Wyoming	성명, 가명, 물리적 주소, 생년월일, 출생지, 판결장소 및 날짜, 유죄판결범죄, 사진, 신체적 외관, 인종, 성별, 신장, 체중, 눈동자 및 머리카락 색깔, 형사 범죄이력, 차량 번호판 또는 등록 번호, 고용주의 물리적 주소, 재학 및 재학예정 중인 교육기관의 물리적 주소

3) 신상정보 등록 담당 기관

Department of Public Safety	Alabama/Alaska/Arizona/Connecticut/Iowa /Massachusetts/Mississippi/New Hampshire /New Mexico/Texas/Washington/West Virginia
Department of Public Safety and Corrections	Louisiana/Utah/Vermont
Crime Information Center	Arkansas
Division of Criminal Information	North Carolina
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	New York
Department of Justice	California/Hawaii/Idaho/Montana
Department of Correction	Colorado/Georgia/Maine/Oklahoma/Wisconsin/Wyoming

Department of Correction and Rehabilitation	North Dakota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elaware
Department of Law Enforcement	Florida/Maryland
Law Enforcement Agency(Division/Office)	Kansas/Michigan/South Carolina/South Dakota /Missouri/Nevada/Pennsylvania
Department of State Police	Illinois/Indiana/Kentucky/Minnesota/Oregon /Rhode Island/Virginia

4) 기타 주별 제도 운영의 특징

- 성범죄자들의 재범위험성에 대해 개별적 평가를 가하는 주로 미네소타 주와 버몬트 주가 있는데 이들 주의 경우는 법집행관 및 전문위원들이 성범죄자들의 복역 후 출소 이전 신상정보 등록여부와 등록기간에 대해 평가를 수행하고 있음. 특히 버몬트 주의 경우 재범위험성에 대한 개별적 평가를 통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경우, 분류 내용에 대해서도 등록 정보로 규정하고 있음.
- 신상정보를 종신 기간 동안 등록해야 하는 성범죄자들에게도 등록명부에서 신상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주들로 메사추세츠, 미시건, 뉴욕, 오하이오, 텍사스, 와이오밍 주가 있음.
-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에 대한 차별, 위협, 린치를 가할 목적으로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로 캘리포니아, 커네티컷, 아이다호, 하와이, 켄터키, 메사추세츠, 미시시피, 뉴저지, 뉴욕, 펜실베니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유타, 버몬트, 버지니아 주가 있음.

2. 연방의 제도 운영 현황

1)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법(The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Act: SORNA)³⁰⁾

- 2006년 제정된 아담 월시 성범죄자 등록 및 고지법은 기존의 워털링법 및 연방 메건법의 내용들을 통합 승계하면서 성범죄자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감독을 의도함과 동시에 각 주의 재량 하에 있던 성범죄자 등록 기준에 대해 연방적 표준을 정립하는 한편 시민이 인터넷상에서 보다 더 쉽게 성범죄자 신상 정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제작하려 시도하였음.
- 아담 월시 성범죄자 등록 및 고지법의 TITLE I이 성범죄자의 등록 및 고지에 관한 법(The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Act: SORNA)인데 이 법의 시작에서 선언 목적 조항(SEC.102)을 통해 그동안 성범죄 피해를 당한 17명의 피해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음.
- 동법의 관련 개념 조항(SEC.103)에서 성범죄자의 개념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 정도에 따른 등급화를 하고 있는데 총 3개 군의 분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음.

제1군 성범죄자 (Tier I sex offender)	가장 경한 범죄자로 제2군 성범죄자 또는 제3군 성범죄자 이외의 자
제2군 성범죄자 (Tier II sex offender)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의해 처벌될 범죄자로 제3군 성범죄자 이외의 자로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다음 유형의 범죄를 행한 자: 성매매, 강요 및 유인, 형사적 성범죄 행위에 종사시키기 위한 이동, 남용적 성접촉(성적 학대), 성행위에 미성년자 활용, 매춘행위에 미성년자 교사,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제작 또는 배포, 제1군 범죄자가 된 이후의 행위
제3군 성범죄자 (Tier III sex offender)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의해 처벌될 범죄자로 다음 유형의 범죄를 행한 자: 가중적 성폭력,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남용적 성접촉(성적 학대), 부모 또는 보호자 이외의 자에 의한 미성년자 유괴, 제2군 범죄자가 된 이후의 행위

- 성범죄자 등록시 요구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음(SEC.114): (i)성명(개인이 사용하는 가명 포함), (ii)사회보장번호, (iii)현재 거주 중이거나 거주 예정지의 주소, (iv)현재 고용되었거나 고

30) 성범죄자 신상등록 고지법(SORNA)의 내용은 <https://www.gpo.gov/fdsys/pkg/PLAW-109publ248/pdf/PLAW-109publ248.pdf> 참조

용 예정 장소의 명칭 및 주소, (v)재학 중이거나 재학 예정인 학교의 의 명칭 및 주소, vi)소유 또는 운행하는 차량의 외관 정보 및 차량 번호판, vii)연방법무부 장관이 요구하는 기타 다른 정보

- 성범죄자가 등록된 각 주 등의 재판 관할에서는 다음의 정보를 더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음(SEC.114): (i)성범죄자의 신체적 외관, (ii)등록된 성범죄자의 형사범죄를 정의하는 법 규정상 문언, (iii)체포 및 유죄판결 일시, 가석방, 보호관찰, 감독조건부 방면의 상태, 등록 상태 및 체포 영장의 존재를 포함한 성범죄자의 범죄이력, (iv)현재 사진, (v)지문 및 손바닥 프린트(장문), (vi)DNA 샘플, (vii)유효한 운전 면허증 또는 신원확인카드(신분증)의 복사본, (viii)연방법무부 장관이 요구하는 기타 다른 정보
- 성범죄자 등록정보의 등록기간은 최대 등록기간 및 감경기간으로 나뉘는데 구체적으로 다음 표와 같음(SEC.115):

	최대등록기간	요건	감경기간
제1군 성범죄자 (Tier I sex offender)	15년	10년간 범죄 미발생	5년 감경
제2군 성범죄자 (Tier II sex offender)	25년		
제3군 성범죄자 (Tier III sex offender)	종신	25년간 범죄 미발생	깨끗한 기록(clean record)이 지속 ³¹⁾ 된 기간

- 성범죄자의 정기적 직접 등록정보 갱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SEC.116) 성범죄자는 직접 각 주 등의 재판 관할에 나타나서 현재 모습의 사진을 찍어야 하고 등록정보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 바 제1군 성범죄자의 경우 매 1년마다, 제2군 성범죄자의 경우 매 6개월마다(반기별), 제3군 성범죄자의 경우 매 3개월마다(분기별) 확인해야 함.

31) 동법 sec.115.(b)(1)은 깨끗한 기록(클린 레코드)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i)1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되는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아야 하고 ii)어떠한 성범죄이든 간에 유죄판결이 없어야 하며 iii)감독조건부 방면, 보호관찰 및 가석방기간을 성공적으로 종료해야 하고 iv)주 등의 재판 관할 또는 연방 법무부 장관이 공인하는 적절한 성범죄자 처우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종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성범죄자에게 등록요건 및 등록에 대해 고지할 의무에 대해서는(SEC.117) 적절한 법집행관이 성범죄자가 수감 중인 경우 구금에서 풀려나기 직전, 구금 중이 아닌 경우에는 형 선고 직후에 이 법 하의 성범죄자 의무에 대해 설명·고지해야 하고 또한 정보를 등록할 의무가 성범죄자에게 설명되었으며 따라서 성범죄자는 등록 요건을 이해한다고 적힌 서면 확인서를 읽고 직접 서명해야 한다고 규정됨.
- 인터넷을 통한 성범죄자 정보에 대한 공공의 접근(SEC.118)에 대해서는 각 주 등의 재판 관할에서 각각의 성범죄자에 대해 우편번호 기반이나 설정된 지리적 반경에 의해 하나의 질의를 통해 관련 정보 획득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웹사이트를 유지해야 함을 규정하며 성범죄자에 관한 정보공개는 연방법무부에서 통합 관리하는 “드루 쇼딘 전국 성범죄자 공공 웹사이트(Dru Sjodin National Sex Offender Public Website)”를 통해 실시하도록 함.
- 한편 공공에의 공개가 의무적으로 면제되는 정보로는 i)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 ii)성범죄자의 사회보장번호, iii)유죄판결로 귀결되지 않는 성범죄자의 체포 관련 사항, iv)연방법무부 장관에 의해 공개가 면제되는 기타 다른 정보가 있고 공공에의 공개가 선택적으로 면제되는 정보로는 i)미성년자에 대한 특정 범죄 이외의 범죄로써 유죄판결 받은 제1군 범죄자에 관한 정보, ii)성범죄자의 고용주 성명, iii)성범죄자가 학생인 경우 소속 교육기관의 명칭, iv)연방법무부 장관에 의해 공개가 면제되는 기타 다른 정보 등이 있음.
- 연방법무부 장관은 성범죄자 및 각 주 등의 재판 관할상의 성범죄자 등록부에 등록을 요하는 이들을 위해 FBI에 전국적 규모의 성범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해야 하며-이를 전국 성범죄자 명부라 칭함- 관계되는 각 주 등의 재판 관할을 위해 즉각적으로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SEC.119)
- 한편 각 주 등의 재판 관할내의 적절한 담당관은 등록부에 있는 성범죄자에 관한 정보를 연방 법무부 장관, 적절한 관련 법집행기관, 각 학교 및 공공 주택기관,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재판 관할, 고용관련 배경 확인을 담당하는 기관, 아동복지 시스템 내에서 미성년자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 미성년자 또는 타 취약계층과 접촉하는 자원봉사자 기관 등에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공동체 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SEC.121)³²⁾

32) 이 조항은 성범죄자 피해자인 메건 니콜 캔커(MEGAN NICOLE KANKA)와 알렉산드라 니콜 재프(ALEXANDRA NICOLE ZAPP)의 이름을 따서 표제로 삼고 있음.

- 연방 법무부 장관은 각 주 등의 재판 관할로 하여금 단일한 성범죄자 등록부 및 인터넷 웹 사이트를 정립하고 운영하도록 가능케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지원할 의무가 있음. (SEC.123) 이를 통해 각 주가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고 주마다 웹사이트가 개설되면 결국 드루 쇼딘 전국 성범죄자 공공 웹사이트(Dru Sjoдин National Sex Offender Public Website)가 주별로 등록 및 관리되고 있는 각 주의 성범죄자 공개 사이트(Public Registry Sites)와 연동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각 주별로 입력하여 게시하도록 시스템화됨.
- 연방법무부장관은 성범죄자 관리지원프로그램(Sex Offender Management Assistance Program)을 설립하고 이행함으로써 이 프로그램 하에서 각 주 등의 재판 관할이 이 법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상충시킬 수 있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법 제정 2년 이내의 신속한 법 준수는 보너스 지급의 자격을 갖추게 됨.
- 성범죄자의 등록 및 고지에 관한 법(SORNA)을 2018년 현재 각 주가 얼마나 이행하고 있는지, 즉 연방의 최소 기준을 준수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방기준이행 진행표 참조.³³⁾

주	범죄행위 및 범죄행위자 포함 여부	지역 고지	등록 정보 확인
Alabama	○	○	○
Alaska	X	X	X
Arizona	X	X	X
Arkansas	X	X	X
California	X	X	X
Colorado	○	○	○
Connecticut	X	○	X
Delaware	X	○	○
District of Columbia	X	X	X
Florida	○	○	○
Georgia	X	X	X
Hawaii	X	○	○
Idaho	○	X	X
Illinois	○	X	X
Indiana	X	○	X

33)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Act(SORNA) State and Territory Implementation Progress Check 2018.4. SORNA Implementation Overview 중 선택·편집.
<https://smart.gov/pdfs/SORNA-progress-check.pdf> 참조

주	범죄행위 및 범죄행위자 포함 여부	지역 고지	등록 정보 확인
Iowa	X	○	○
Kansas	○	○	○
Kentucky	X	X	X
Louisiana	○	○	○
Maine	X	○	X
Maryland	○	○	○
Massachusetts	X	X	X
Michigan	○	○	○
Minnesota	○	X	X
Mississippi	○	○	○
Missouri	○	○	○
Montana	X	X	X
Nebraska	X	○	○
Nevada	○	○	○
New Hampshire	X	X	○
New Jersey	X	X	X
New Mexico	X	X	○
New York	X	X	X
North Carolina	X	X	X
North Dakota	X	X	X
Ohio	○	○	○
Oklahoma	○	○	○
Oregon	X	X	X
Pennsylvania	○	○	○
Rhode Island	X	X	X
South Carolina	○	○	○
South Dakota	○	○	○
Tennessee	○	○	○
Texas	○	X	X
Utah	X	X	X
Vermont	X	X	X
Virginia	○	○	○
Washington	○	X	X
West Virginia	X	X	X
Wisconsin	○	X	X
Wyoming	○	○	○

2) 성범죄자 양형, 감독, 체포, 등록, 및 추적국(Office of Sex Offender Sentencing, Monitoring, Apprehending, Registering, and Tracking: SMART)

- 연방정부가 법무부 내에 신설한 기관인 성범죄자 양형, 감독, 체포, 등록 및 추적국은 신상공개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성범죄자 등록 및 고지 프로그램의 기준을 제작하고 아담 월시 법에 의해 승인된 성범죄자 등록 및 고지와 관련된 보조금 프로그램을 집행하며 주정부뿐 아니라 지방 정부, 공공 단체 및 민간 기관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³⁴⁾
- 미국 50개 주 관할 지역 담당 부서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웹사이트 관리 업무를 충실하게 잘 운영하고 있는지 수시로 중앙 정부의 자문을 받게 하고 해당 운영 지원기금을 지원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원조를 수행하고 있음.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관련 형사사법기관의 성범죄자 관리, 감독, 수사, 체포 등을 보다 신속하고 용이하게 원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으로 파악할 수 있음.

34) <https://www.smart.gov/about.htm> 참조.

III

미국 성범죄자 등록·공개·고지제도에 대한 비판과 논란

1. 정책의 인지 및 실증적 효과 측면

- 성범죄자의 신상 등록·공개·고지제도가 시행된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미국에서는 제도 자체에 대한 실증적 효과 분석 역시 다양하게 전개되었음.
- 1998년에 워싱턴 주에서 Phillips 등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에서 응답자의 약 80%가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보였으며 동 제도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동시에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일반시민들이 성범죄자들로부터 보다 안전하다고 응답하였다고 함.³⁵⁾ 또한 2008년에 Anderson 등에 의해 실시된 연구에서는 90% 이상이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나 실제 인터넷 등을 통한 신상공개 자료의 열람 경험자는 35%정도에 해당하였다고 함.³⁶⁾
- 2007년 Tewksbury 등의 연구에 따르면, 범죄자 대부분은 자신이 신상등록 및 공개제도의 대상자가 되는 것에는 부정적이나 신상등록 및 공개 제도의 의의는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함.³⁷⁾ 한편 2007년 Levenson 등의 연구에서 신상공개 대상자들은 성범죄자라는 사실이 이웃에 공개된 이후 물리적 공격이나 협박, 주거나 자동차 등에 대한 공격, 이웃 사람들로부터의 이사 강요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함.³⁸⁾ 또한 2008년 Mercado 등의 연구

35) Phillips, D. M., *Community Notification as Viewed by Washington's Citizens*, Olympia, WA: Washington Stat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1998.

36) Anderson, A. L. & Sample, L. L., "Public Awareness and Action Resulting from Sex Offender Community Notification Laws", *Criminal Justice Policy Review*, 19, 2008

37) Tewksbury, R. & M.B. Lees., *Perceptions of punishment: How registered sex offenders view registries*, *Crime & Delinquency*, 53, 2007

38) Levenson, J. S., K. M. Zgoba & R. Tewksbury., *Sex offender residence restrictions: Sensible crime policy or flawed logic?* *Federal Probation*, 71(3), 2007

에 의하면 신상공개 대상자들의 가족도 이웃에 의해 신상공개 대상자 본인과 유사한 정도의 부정적 경험을 겪은 것으로 나타남.³⁹⁾

- 한편 2007년 Levenson 등의 연구에 따르면 신상정보 공개정보의 범위 및 내용에 대해서 지지도를 항목별로 평가한 바 미국 대부분 주에서 공개되고 있는 거주지 주소와 차량 관련정보 등에 대한 지지도는 전반적으로 매우 높게, AIDS 등의 감염여부 및 피해자의 연령, 범죄자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 등에 대한 지지도는 다소 높게, 범죄자의 지문이나 고용주의 주소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필요성을 낮게 평가하였다고 함.⁴⁰⁾

2. 규범적 차원의 비판

1) 다른 법규범 원리와의 충돌문제

- 성범죄자 신상 등록·공개·고지에 관한 법은 법 제정초기부터 위헌성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였는데 1994년 제정된 알래스카의 성범죄 등록법(Alaska Sex Offender Registration Act)이 이미 성범죄로 복역 후 사회로 복귀한 자 또는 현재 복역 중인 자를 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문제가 된 적 있으나 연방대법원의 다수의견은 동법은 이미 공개된 형사기록을 토대로 정확한 정보를 확산함으로써 오명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피의자의 수치심은 불가피한 부산물에 불과하여 형벌적 효과가 없다고 하였음.⁴¹⁾

39) Mercado, C. C., Alvarez, S. & Levenson, Jill, The Impact of Specialized Sex Offender Legislation on Community Reentry,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20(2), 2008

40) Levenson, J. S., Brannon, Y. N., Fortney, T., & Baker, J., "Public Perceptions About Sex Offenders and Community Protection Policies", *Analyses of Social Issues and Public Policy*, 7(1), 2007

41) *Smith v. Doe*, 123 S.Ct. 1140 (2003). 이에 대해 반대의견을 주장한 스티븐스, 킴버거 2인의 연방대법관은 메건법이 등록대상자의 헌법상 보장된 자유를 의심의 여지없이 침해한다고 주장하였고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는 개인 신상정보는 당사자에게 치명적 오명을 남기므로 이 결과는 형벌과 같다고 보았음. 자세한 의견 내용은 문재완, 위의 논문, 359-360면 참조.

- 또한 코네티컷 주 성범죄자 등록법(Connecticut sex offender registry law)상의 조항, 즉 공공안 전국이 성범죄자의 이름, 주소, 사진 등 신상정보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공공에 열람 가능케 한 것이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해 연방대법원의 렌퀴스트 대법원장은 비록 코네티컷 성범죄자 등록법상의 공적 고지 조항이 성범죄자에게 자유의 이익(liberty interest)을 박탈시킨다 하더라도 적법절차 조항이 범죄자에게 그들이 현재 위험한지 여부에 대한 청문을 할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음. 즉 주법 하에서 등록대상자가 현재 위험한 자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그래서 현재의 위험성에 대해 의견 진술 기회를 준다든 것 자체는 무의미하고 당사자가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적법절차의 보호를 받아왔으므로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을 연방대법관들은 제시하였음.⁴²⁾

2) 아담 월시 법의 입법적 문제 및 그 운용에 대한 비판

- 현재의 통합적 연방법인 아담 월시 법이 시행된 지도 10년이 경과하였는데 이 법의 입법적 문제점 및 법제 운용에 대해 몇 가지 사항들이 지적될 수 있음.
- 첫째, 성범죄자의 등록 요건이 특히 제1군 성범죄자의 분류에 있어서처럼 상당히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고 범죄자를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하는 지 여부를 결정할 때 폭력범죄와 비폭력범죄와의 명확한 구별이 결여되어 있어 재범위험성이 없는 많은 비폭력적 성범죄자들도 성범죄자로서 등록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음.
- 둘째, 비폭력 성범죄자들까지 모두 그 신상을 등록할 경우 오히려 중한 성범죄자에 대한 감시·감독 측면에 있어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지나치게 많은 범위의 성범죄자들의 행적을 추적하는 작업은 법집행기관에게 과부하를 걸리게 할 수 있고 오히려 중한 성범죄자의 반복적 범행을 막는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음. 레벨에 따른 등급화가 되더라도 법집행기관으로서의 레벨이 낮다고 해서 당해 성범죄자의 추적을 완전히 배제할 수만은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실무상 이러한 전반적·망라적 시스템 운용 도중 레벨이 높은 단계의 성범죄자들이 자신들에 대한 감시망을 성공적으로 빠져 나갈 수가 있음.
- 셋째, 아담 월시법은 연방법 수준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개별적 위험성 평가를 주법이 준수해

42) Connecticut Dept. of Public Safety v. Doe, 123 S.Ct. 1160 (2003).

야 할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연방법을 준수하게 한다면 결과적으로 일부 주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절차를 포기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음.

- 넷째, 성범죄자의 등급화에 따라 1군 성범죄자의 경우, 원칙적 15년 기간 동안의 등록을 전제로 10년간 아무 범죄 없이 등록을 유지한 경우 남은 5년의 기간이 감경되도록 함으로써 등록명부에서 신상정보를 삭제시킬 수 있으나 2군 성범죄자의 경우, 기간 내 감경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조건 등록 기한을 채워야 하며 기간내 신상정보를 삭제시킬 방안이 존재하지 않음. 또한 3군 성범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 기간을 종신으로 전제하고 25년간 아무 범죄 없이 등록을 유지한 경우에 한하여 깨끗한 기록을 유지한 기간 동안만 감경을 가능케 하여 결과적으로 종신 기간 동안 신상정보를 삭제시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극소수에 해당하게 되는바 이를 연방법으로 각 주에 강제할 경우 일부 주들이 등록명부에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삭제할 기회를 주고 있는 현실에 대해 역행하는 조치가 될 수 있음.
- 다섯째, 아담 월시법이 성범죄자를 등급화하고 이들의 신상등록을 상당기간 강제하는 태도는 성범죄자의 재사회화보다는 처벌과 응징에 더 주력을 두고 있는 입법 태도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또한 성범죄자의 치료를 통한 재사회화와 성범죄자로부터 공동체의 보호라 가치가 적절한 균형성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도 가능함.
- 여섯째, 아담 월시법에는 성범죄자로 등록된 자의 신상정보에 대해 열람을 한 극단적 성향의 시민이나 활동가들이 오히려 성범죄자들을 공격하거나 린치를 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한 규범적 차원의 보호책을 정립해야 한다는 고민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이 가능함. 또한 이 비판은 일부 주에서 성범죄자들에 대한 위협이나 혐오에 기한 행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령을 운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연방법의 입법 태도가 현실적 측면에서 뒤쳐져 있다는 식의 해석으로 연계될 수 있음.
- 일곱째, 아담 월시법은 성범죄의 태양 및 심각성 정도에 따라 등급화를 하는 바람에 그 연령상 성인 성범죄자들보다 재사회화가 더 강하게 요구된다고 볼 수 있는 청소년 성범죄자도 한꺼번에 등급화하여 등록을 통한 신상공개를 강제하고 있음. 이로써 청소년기의 성적 일탈에 강한 낙인을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결국 이들에 대한 재사회화보다는 오히려 기성사회와의 단절 및 고립을 유발시키는 경향이 있음.

IV 결어

- 미국의 성범죄자 신상등록·공개·고지제도는 잔혹하고 흉포한 성범죄 피해 사건이 계속 누적·발생해 오면서 비극적 사건이 유발하는 지역사회 공동체에의 영향력 및 파급력에 기인하여 각 주단위로 법제가 먼저 정비되기 시작하였음.
- 초기에는 단순히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한 등록제도부터 먼저 도입되기 시작하여 추후 공개 및 고지제도와 재범위험관리제도가 추가되었는데 한편으로는 성범죄자에 대한 공동체의 경계를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함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금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구금 등을 통한 치료, 재범 방지 및 재사회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자 시도하였음.
- 1990년대에는 연방(전국)차원의 법제들이 정비되면서 웨터링법이 연방 메건법으로 승계되었고 다시 2000년대 중반에는 아담 월시 성범죄자 등록 및 고지법이 선행 연방법제들을 승계함과 동시에 종합·재편됨으로써 통일적·전국적 법제로서 각 주의 준수를 유도하는 규범적 가이드라인을 현재까지 제공하고 있음.
- 현행 아담 월시법에 따르면 각 주는 연방의 최소 규범 기준을 반영해야 하고 이는 연방보조금 지원 방식에 의해 간접적으로 강제되며 연방 법무부는 주의 전국적·통일적 기준 준수를 위해 계속 독려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실제 각 주의 연방법 준수 여부는 주마다 상이하게 진행되고 있음. 그 이유로는 첫째, 연방법 상의 기준을 각 주가 갖추는데 드는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고 둘째, 연방제 국가인 미국의 특성상 주와 지방 정부의 법제 운용 권한을 연방이 제어 혹은 침탈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기 때문으로 파악됨.
- 각 주마다 운용되고 있는 성범죄자 신상등록·공개·고지제도는 등록 및 공개·고지 내용에 있어서 주의 독자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는 사항들도 다분히 존재하나 대부분의 항목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 신상정보들은 대동소이하거나 유사한 경향이 있음.

- 각 주에 따라서는 현행 연방법 기준보다 상회하는 수준의 주 법제를 보유하는 곳도 있는데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성범죄자에 대해서 i)출소시 재범위험성 평가를 전문위원을 통해 수행하거나, ii)종신 기간 동안 신상정보가 등록되더라도 신상정보를 삭제할 기회를 부여하거나, iii)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의 신상등록정보가 극단적 성향의 시민 및 활동가에 의해 차별, 위협, 린치를 가할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갖고 있는 경우 등이 있음.
- 연방은 아담 월시법 제정 이후 성범죄자 양형, 감독, 체포, 등록, 및 추적국(SMART)를 신설하여 성범죄자 등록 및 고지 프로그램의 관련 규정을 집행하기 위한 최소 기준을 제정하고 연방 보조금 프로그램을 집행하며 주정부뿐 아니라 지방 정부, 공공 단체 및 민간 기관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SMART 부서는 최근 성범죄자 관리·산정 및 계획 주도안(Sex Offender Management Assessment and Planning Initiative: SOMAPI)을 천명하여 그간 연방의 신상정보제도 관련 업무 현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함과 동시에 이를 토대로 성범죄자 관리 플랫폼을 수립하여 연방 전체의 성범죄자 관리를 위한 총괄 업무를 계속 진행해 나가고자 시도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주 정부 및 지방정부와의 유기적 협력을 위해 연방 정부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참고문헌

1. 국문 자료

- 강지현·김지선, “성범죄 피해자와 가족의 관점에서 본 신상공개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53호 : 9-36, 2013.
- 강지현, “신상공개제도 대상자의 제도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형사정책연구, 237-259, 2013.
- 강지현, “신상공개 대상자들의 제도수용태도 유형분류와 영향요인 검증”, 한국공안행정학회보 - 제57호 : 9-34, 2014.
-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성폭력 재범방지정책과 인권”, 2010.
- 김지선·강지현·김정명,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 남재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부모의 인식태도”, 2010.
- 문재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위헌성 재검토”, 헌법학연구 제9권 제2호, 2003.
- 신준섭·이영분,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분석”, 한국아동복지학, (18), 35-61, 2004.
- 유진, “아동학대와 위험한 타자의 범죄적 섹슈얼리티”, 페미니즘 연구, 16(1), 37-79, 2016.
- 윤덕경·김한균·천재영·홍소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 이병희,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범죄자신상공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 이용식,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에 대한 재검토”, 피해자학연구 14권 2호, 247-269, 2006.

- 임희·박호정, “미국의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법에 관한 연구”,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2013 Jun; 11(6): 23-42, 2013.
- 장승옥·배미향,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직장인 남성의 인지도와 태도”, *한국사회과학연구*, 21(1), 19-44, 2002.
- 조윤오, “미국의 성범죄자 신상정보제도 운영 동향 및 시사점에 관한 소고”,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4권 제1호: 115-132, 2018.
- 중앙법학연구소,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및 취업제한제도의 발전방향 연구”, 여성가족부, 2012.
- 차정섭,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신상공개제도의 비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제4권 제1호, 2007.
-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개선 연구”, 2003.
- 청소년보호위원회, “신상공개제도 효과성 분석 연구”, 2004.
- 최응렬·장현석·이창배,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제19권 제1호, 2007.
- 황성기,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한림법학 FORUM*, 12, 31-63, 2003.
- 홍완식, “미국의 아동대상 성범죄 관련 법률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2010.

2. 영문자료

- Anderson, A. L., & Sample, L. L., “Public Awareness and Action Resulting from Sex Offender Community Notification Laws”, *Criminal Justice Policy Review*. 19. 2008
- Kelly, H.T., Louisiana’s “Megan’s Law: The Need for a Principled Approach”, *Louisiana Law Review* Vol. 58(4), 1998.
- Levenson, J. S., K. M. Zgoba & R. Tewksbury., Sex offender residence restrictions: Sensible crime policy or flawed logic? *Federal Probation*, 71(3), 2007

- Levenson, J. S., Brannon, Y. N., Fortney, T., & Baker, J., “Public Perceptions About Sex Offenders and Community Protection Policies”, *Analyses of Social Issues and Public Policy*. 7(1), 2007
- Logan, W. A.,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Community Notification Policy: Past, Present, and Future”, Florida State University College of Law, Scholarship Repository, 2008.
- Mercado, C. C., Alvarez, S. & Levenson, Jill, The Impact of Specialized Sex Offender Legislation on Community Reentry,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20(2), 2008
- Philips, D. M., *Community Notification as Viewed by Washington’s Citizens*, Olympia, WA: Washington Stat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1998.
- Redlich, A.D., “Community Notification : Perceptions of Its Effectiveness in Preventing Child Sexual Abuse”,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Vol. 10(3), 2001.
- Tewksbury, R. & M.B. Lees., Perceptions of punishment: How registered sex offenders view registries. *Crime & Delinquency*, 53, 2007

3. 인터넷 웹사이트

<http://app.leg.wa.gov/RCW/default.aspx?cite=4.24.550>

<http://www.lsp.org/socpr/history.html>

<http://all4consolaws.org/lawsbystates/states/rsol%20louisiana%20lexis%20reg%20geq%20140422.pdf>

<https://www.smart.gov/legislation.htm>

<https://smart.gov/pdfs/SORNA-progress-check.pdf>

<https://www.govtrack.us/congress/bills/103/s1759/text>

<https://www.gpo.gov/fdsys/pkg/BILLS-103hr3355enr/pdf/BILLS-103hr3355enr.pdf>

<https://www.gpo.gov/fdsys/pkg/BILLS-104hr2137enr/pdf/BILLS-104hr2137enr.pdf>

<https://www.gpo.gov/fdsys/pkg/PLAW-109publ248/pdf/PLAW-109publ248.pdf>

법제현안분석지원
현안대응 Issue Paper 2-㉔

미국의 성범죄자 등록·공개·고지법의 실효성에 관한 법제현안분석

발행일 2018년 11월 30일
발행인 이익현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T.044)861-0300 F.044)868-9913
등록번호 1981.8.11. 제2014-000009호
<http://www.klri.re.kr>

-
1. 본원의 승인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2. 이 책자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978-89-6684-862-1 93360

